

#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성 제재 분석

## Violence Regulation Analysis of Television Programs

김유정

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Yoojung Kim(kimyj33@hanmail.net)

### 요약

폭력물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에 대한 제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과 맥락적 폭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폭력적인 내용과 표현으로 인해 심의제재를 받은 위반사례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고 이를 미디어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측면에서는 폭력행위에, 맥락적 측면에서는 폭력동기에 가장 많은 제제가 행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폭력위반의 경우 지상파는 권고, 주의, 경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제제가 많이 의결되었다. 맥락적 폭력에 대해 제제는 지상파는 주의, 경고, 권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경고, 주의, 권고의 순으로 많아 다소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제재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방송 폭력물 | 물리적 폭력 | 맥락적 폭력 | 폭력성 위반 |

### Abstract

This study ascertained violence regulation of television program. Television programs that infringed the standards of violence and were sanctioned, were analyzed in terms of physical and contextual violence. In order to get data, content analysis was adopted. The results shows that violent behavior in terms of physical and violence motivations in terms of contextual were most frequently regulated. There were different results of the level of imposed sanction in terms of physical and contextual violence between network and cableTV. The regulation of television violence could be confirmed with these results.

■ keyword : | Television Violence Program | Physical Violence | Contextual Violence | Violence Regulation |

## I. 서론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는 OECD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폭력으로 인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살인, 성폭력, 폭행과 관련된 범죄

율 모두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1]. 이처럼 국내에서 폭력으로 인한 범죄율이 증가하자 사회적으로 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폭력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른 폭력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는 과정에서 폭력

\* 이 논문은 2013년도 수원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입니다.

접수일자 : 2014년 07월 03일

수정일자 : 2014년 09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9월 11일

교신저자 : 김유정, e-mail : kimyj33@hanmail.net

물에 따른 영향력 차단이 거론될 수 있다. 왜냐하면 폭력물 노출의 결과로 폭력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폭력이 난무한 미디어 내용이나 장면이 사회적 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디어가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을 반영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는 오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재미로 폭력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폭력효과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중에서 특히 텔레비전 방송은 폭력물에 대한 사회적 유해성 논의가 있을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시청자들이 폭력이 내포된 프로그램에 노출되면 그 내용이 학습되어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모방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에서 행해지는 폭력 중 상당수가 텔레비전에서 제공되는 폭력과 연관되어 있음이 조사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도 있다[2][3]. 그러나 오락적 혹은 재미를 준다는 이유로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적인 내용과 표현이 묵인되고 간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폭력적인 내용과 장면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시청자들의 사고와 태도 및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폭력이 시청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약화시키고 모방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4][5]. 이에 따라 관련 선행 연구들[6][7]은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방송 프로그램 속에서 묘사되고 표현된 폭력이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폭력을 학습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여 왔다.

따라서 폭력물의 유해하고 반사회적 내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텔레비전 폭력물은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적 내용과 표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하고 있다. 폭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토대로 방송 프로그램 속의 폭력을 통제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걸쳐 관리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에서의 폭력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폭력 제재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폭력성에 대한 우려

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폭력이 심의를 통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지상파와 케이블TV를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제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폭력성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곧 제시된 폭력에 대한 제재이므로 본 연구는 방송심의 위반사례 중 폭력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국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과 장면에서 표현되고 묘사된 폭력에 대한 제재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흔히 폭력을 분석함에 있어 물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주는 경향이 있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맥락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적 뿐만 아니라 맥락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케이블TV의 영향력이 지상파와 맞지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케이블TV를 포함하며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심의가 미디어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 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유해성에 대한 내용규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선정성과 폭력성에 집중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폭력성 보다는 선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폭력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텔레비전 폭력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만 폭력성 규제 논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 제재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므로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 II. 문헌연구: 텔레비전에서의 폭력과 심의

### 1. 폭력의 의미

폭력에 대한 규제는 폭력을 해석, 평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이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브너(Gerbner) 등[6]은 폭력을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명백한 신체적 힘의 표현,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다그치는 행위, 혹은 실제로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전미TV폭력연구(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8]는 폭력을 신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을 묘사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기 위해 어떠한 힘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정하였다. 이와 같이 물리적인 측면이 부각된 정의에 반두라(Bandura)[9]는 사회적 의미를 첨부해 폭력을 관찰가능한 행동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 결과, 행위자의 역할과 지위, 사회적 가치 등의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폭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해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폭력을 단순히 물리적 행위적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행위 측면뿐만 아니라 폭을 넓혀 폭력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폭력이 폭력행위만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여러 요인과 결부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과 결부되는(또는 연계되는) 맥락은 이용자가 프로그램 내에서 묘사된 폭력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7]. 이에 대해 컴스탁과 팍(Comstock & Paik)[10]은 폭력이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경우, 폭력이 정당한 것으로 묘사될 경우(예: 경찰이나 법집행자에 의해 행사된 폭력), 폭력이 행사된 환경이 시청자의 환경과 유사하거나, 폭력 행위자가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된 경우, 폭력물이 유희적으로 표현되거나 자연적 현상으로 묘사될 경우 폭력에 대한 인식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폭력에서의 맥락적 의미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군터(Gunter)[11]는 텔레비전에서는 상호의존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요인들이 결부되어 폭력이 묘사되기 때문에 장르, 등장인물 유형, 유해성정도, 표현방법 등의 맥락적 요인을 적용하여 폭력을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폭력은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되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맥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폭력의 의미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맥락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2. 텔레비전 속의 폭력과 그 영향에 대한 논의

방송사들은 프로그램에서 폭력장면을 삭제할수록 재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가능한 많은 폭력적인 표현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한다. 마치 폭력장면이 삭제되면 드라마 최고의 재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12]. 이처럼 재미를 준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폭력물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자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우려하여 폭력물 방영에 대한 정량적 조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텔레비전 폭력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끄집어낸 거브너 등[6]은 지상파의 주시청시간대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시간당 4.5에서 6.1개의 폭력행위가 등장한다고 보고하여 텔레비전 폭력실태를 경고하면서 폭력성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어진 조사에서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장면이 계속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노출가능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짐쳐져 이를 검증하려는 작업이 이어졌다. 텔레비전 폭력의 영향에 관한 217개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텔레비전의 폭력적인 내용과 수용자의 공격성 및 반사회적 행위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4].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노출은 시청자들의 사고와 태도, 행동이나 공격적 성향과 폭력적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실세계에서 실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2]. 폭력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도 추적되었는데 존슨 등(Johnson et al.)[3]과 휴즈 등(Huesman et al.)[13]은 어린 유년 시기에 시청한 텔레비전 속의 폭력이 성인이 된 후에 행하는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어린 시절의 폭력에 대한 노출이 성장 후 나타나는 폭력성, 심지어 범죄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폭력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텔레비전 폭력을 통한 공격적 행위 및 폭력적 태도에 대한 학습이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14]. 또한 폭력물을 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비해 더 공격적인 행위를 표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5].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언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16] 언어적 모방이 행위모방보다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모방되었다[17].

한편 폭력물을 과다 시청할 경우 폭력적인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되어 둔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야기되었다. 텔레비전 폭력물을 과다 시청한 어린이들은 비폭력적인 영상물을 시청한 어린이들에 비해 후속적인 폭력영화에 대해서 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18]. 이렇듯, 폭력물에 관한 모든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폭력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폭력물을 규제하게 된 것이다.

### 3.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규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는 규제기관에 의한 타율적 내용규제와 방송사 자체에서 행하는 자율적 심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규제기관에 의한 내용규제는 방송심의라고 일컫는다. 방송심의는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좋은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의 책임을 제고시키고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현재의 방송심의 업무는 2008년 2월에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여 지상파를 비롯하여 케이블TV 등의 유료 방송에서 방영되는 영상물에 대해 폭력성을 심의하고 있다.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 방송내용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권한과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권을 부여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내용 심의와 규정 제정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심의는 심의규정에 의거하고 심의절차를 걸쳐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된 내용에 따른 등급을 지정하거나 특정 유해하고 문제시되는 내용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폭력성에 대한 심의는 헌법, 방송법, 방송심의규정에 근거를 둔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방지와 방송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10조와 헌법 제21조 제4항은 폭력성 심의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폭력성 심의는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인 건전성 심의와 관련되며 이는 방송법 제5조에 방송의 공적 책임의 하나로 명

시되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방송법 제33조에 의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폭력성과 관련하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인권존중,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심의에 적용하고 있다.

방송에 대한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은 방송법 제33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위임명령이며, 제33조에 제시된 규정을 구체화하여 이를 집행할 근거를 설정하는 집행명령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19]. 폭력성 심의에 해당되는 건전성은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심의규정 제7조 2항)에 의거한다. 또한 방송은 ‘건전한 생활기풍 조성’(제28조)과 ‘사회통합’(제29조)에 이바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제43조)고 명시되어 있어 건정성은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건정성은 방송심의의 핵심적인 개념이며 하위항목으로 선정성, 폭력성, 바른 언어사용이 있다. 폭력성은 심의규정의 제4절 윤리적 수준에서 폭력이 동원될 수 있는 살인 고문, 사형과 인신매매, 유괴, 매춘, 성폭력, 노인·어린이 학대 등에서의 표현의 신중을 명시한 제26조(생명의 존중),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에서 과도한 폭력의 묘사나 전달이 되지 않도록 명시한 제36조(폭력묘사), 충격·혐오감을 줄 수 있는 참수, 교수, 절단, 흉기를 사용한 살상 등과 관련된 표현의 신중을 명시한 제37조(충격·혐오감), 범죄 내용, 사용흉기, 약물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금하는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를 근거로 심의된다. 그 외에도 범죄에 대한 재연에 관한 제39조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폭력성 위반으로 상정된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절차를 걸친다. 심의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폭력성 위반사항에 있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최종적으로 의결된 심의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 장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2013년 8월 ‘시청자사과’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음에 따라 그 이후 시청자사과는 제재조치에서 배제되었다.

표 1. 폭력성 관련 방송 심의기준

심의조항	조항 내용
제26조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됨. 인신매매, 유괴, 매춘, 성폭력, 노인·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 신중해야 함. 동물학대나 살상 장면을 다루는 표현에 신중을 가할 것에서 폭력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표현해야 함.
제36조	과도한 폭력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묘사되거나 스포츠·게임 등을 통해 전달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함.
제37조	충격·혐오감을 줄 수 있는 참수, 교수, 절단, 자살, 살상, 신체훼손, 시신 훼손, 동물살상, 범죄 묘사, 흥기를 사용한 살상 등과 관련된 표현에 신중해야 함.
제38조	범죄묘사에 있어 내용, 사용흥기, 악물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금함
제39조	범죄에 대한 재연이 실제 상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III. 연구문제와 방법

#### 1. 연구문제

앞부분의 문헌연구를 통해 논의된 폭력성과 이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폭력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위반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폭력성 위반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에서의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논의는 앞부분의 문헌연구에 기술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기 위한 요약적인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에 대해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즉 방송내용 중의 위반사항을 방송 또는 유통된 후에 심의 의결한다. 이 과정에서 방송이 행해야 하는 공적 책임 준수와 관련하여 지정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공적 책임 준수와 관련하여 방송내용에 대한 공정성, 선정성, 폭력성 등이 적용되지만 본 연구

에서는 폭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텔레비전 속의 폭력은 외형적으로 부각되는 물리적 폭력도 있고 폭력적 상황으로 묘사되어지는 맥락적 폭력도 있다. 폭력성 심의가 보이는 폭력을 차단해야 하지만 폭력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는 데도 주력해야 하므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맥락적 측면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프로그램 속의 폭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또는 여러 요인과 결부되어 표현,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폭력은 상황적 요인과 결부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어 맥락적 요인이 적용된다. 따라서 폭력성에 대한 심의에서 물리적 맥락적 측면이 고려되어 폭력성 위반여부가 판단되었을 것이다.

최근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 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케이블TV의 영향력은 지상파 못지않지만 미디어 차별적인 규제적용에 따라 지상파와 케이블TV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차별을 두어왔다. 따라서 폭력성에 대한 심의과정에서도 미디어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어 심의제재를 파악함에 있어 이러한 요인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폭력성에 대한 방송 심의 위반사례를 물리적 맥락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다시 미디어와 장르별로 확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물리적, 맥락적 측면에서의 폭력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제재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물리적, 맥락적 측면에서의 폭력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제재는 미디어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 2. 분석 자료 수집과정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의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2012년 8월 제재조치 중 시청자사과가 위헌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2012년 7월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

는 심의사례집을 다운로드받아 수집하였다. 심의사례집에는 위반사례들에 대한 심의의결사항, 심의의결내용, 적용조항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내용분석유형을 마련한 후 실행되었으며 분석 및 코딩화 작업은 2013년 9월에서 11월까지 연구자와 연구자로부터 훈련받은 1명의 코더가 실시했다. 이들 코더간의 신뢰도는 .94였다.

### 3. 측정과 분석 유목

폭력성 위반사례를 내용분석하기 위해 적용된 분석 유목은 다음과 같다.

#### 3.1 제재수위 분석유목

제재수위는 폭력성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수위를 의미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이 폭력성 관련 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 조치를 명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권고, 주의, 경고, 프로그램의 중지,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수위가 적용되었다.

#### 3.2 물리적, 맥락적 폭력 분석 유목

폭력은 외형적인 신체적 위해로 간주되며 물리적 맥락적 폭력을 포함한다. 물리적 폭력은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폭력의 현실성을 표현한 것이다. 폭력의 현실성을 나타내는 것은 직접적인 폭력행위, 동원되는 무기,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인 상처나 흉터이므로 장면면에 나타난 흉기, 폭력도구, 폭력행위, 상처, 피를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맥락적인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의 묘사가 아닌 폭력행위나 이미지와 관련된 요인, 요건,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포터와 워렌(Potter & Warren)[20]은 폭력의 맥락요소로 보상, 의도, 동기, 후회, 결과, 표현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하승태 등[21]은 맥락적 요소로 가해자/피해자 유형, 연령, 폭력의 동기, 보상 등의 요인을 동원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맥락적 요인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요인을 폭력동기, 폭력에 대한 보상, 폭력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영역에 세부항목을 도입 적용하였다. 폭력의 동기에는 자기방어(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폭력), 분노/보복(과거에 입었던 피해를 되갚기 위해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 표출에 따른 폭력), 개인 및 집단이익(물질적, 사회적, 이념적 이익추구를 위해 자발적 또는 명령에 의한 폭력), 단순 재미와 우연한 사건이 포함되었다. 보상에는 물질적 보상(돈, 지위, 권력의 획득 및 박탈과 관련된 폭력), 사회적 보상(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또는 불인정을 받기 위한 폭력), 언어적 보상(언어적인 칭찬, 격려, 비난과 관련된 폭력)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폭력대상 인물유형에는 부모, 가족친지, 노인, 어린이, 부녀자,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기타가 포함되었다.

### 4. 통계처리

내용분석한 자료는 교차분석 및 다중응답분석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특히 중복코딩으로 인한 다중측정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응답분석을 동원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물리적,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 분석

폭력성 위반사례들의 심의 의결내용을 분석하여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구타 등의 폭력행위, 폭력에 동원된 칼과 총 등의 흉기와 그 외의 폭력도구(칼, 총 등을 제외한), 폭력의 결과인 신체의 상처나 피와 이에 대한 제재수위를 교차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 중 28%가 행정지도인 권고이며 나머지 72%는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 주의가 약 3분의 1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물리적 폭력의 모든 항목에서 위반건수의 10%이상이 시청자사과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외상의 경우에는 20%이상이었다. 폭력성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항목은 폭력행위(49.1%)였으며 이에 대한 제재는 권고와 주의가 동일하게 가장 많이 내려졌고 그 다음으로 경고가 많았다. 방송장면 속

의 흥기에 대해서는 권고, 주의, 경고의 순으로 제재가 많았지만 권고와 주의의 차이는 미비하였다. 또한 다른 폭력도구 사용에 대한 제재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많았다. 외상의 경우 상처와 피는 동일하게 주의, 경고의 순으로 제재가 많이 내려졌지만 시청자사과가 20%이상을 차지해 다른 물리적 폭력에 비해 시청자사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중복코딩, 단위건수)

	폭력 행위	폭력행위 도구		폭력행위 외상		합
		흥기	폭력도구	상처	피	
권고	32 (29.9)	11 (29.7)	6 (28.6)	7 (23.3)	5 (21.7)	61 (28.0)
주의	32 (29.9)	10 (27.0)	8 (38.1)	9 (30.0)	7 (30.4)	66 (30.3)
경고	24 (22.5)	8 (21.6)	4 (19.0)	5 (16.7)	5 (21.7)	46 (21.1)
프로그램 중지	4 (3.7)	2 (5.4)	0	3 (10.0)	1 (4.3)	10 (4.6)
시청자 사과	15 (14.0)	6 (16.2)	3 (14.3)	6 (20.0)	5 (21.7)	35 (16.0)
합계	107 (100)	37 (100)	21 (100)	30 (100)	23 (100)	218 (100)

표안의 ()는 column percent임.

폭력성 위반사례들의 심의 의결내용을 분석하여 맥락적 폭력에 따른 제재수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표 3]. 폭력내용에 있어 동기에 따른 폭력행사가 폭력성 심의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81건으로 보상(46건)이나 대상(41건)에 비해 약 두 배 많았다. 동기에 따른 폭력위반에 대한 의결된 제재는 주의, 경고, 시청자사과, 권고의 순으로 많았다. 보상과 폭력대상으로 인한 폭력위반에 대한 제재는 동일하게 경고, 주의, 권고, 시청자사과의 순으로 많이 의결되었다. 동기의 경우 약 3분의 1이 주의로 결정되었으며 건수 차이가 2건밖에 나지 않지만 시청자사과(19.8%)가 권고(17.3%)보다 더 많았다. 보상과 폭력대상의 경우 경고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으며 제재의 절반이상이 주의와 경고에 해당되었다.

물리적 폭력과 맥락적 폭력 간의 프로그램 중지와 시청자사과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주의와 경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맥락적 폭력(59.2%)이 물리적 폭력(50.3%)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정제재에 해당되는 제재로 보면

맥락적 폭력은 약 80%를 차지하지만 물리적 폭력은 약 70%였다. 또한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가 주의, 권고, 경고의 순이지만 맥락적 폭력은 주의, 경고, 권고의 순이었다. 따라서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수위가 물리적 폭력에 비해 다소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중복코딩, 단위건수)

	동기	보상	대상	합계
권고	14(17.3)	10(21.8)	8(19.5)	32(19.0)
주의	29(35.8)	12(26.1)	11(26.8)	52(31.0)
경고	19(23.4)	15(32.6)	15(36.6)	49(29.2)
프로그램중지	3(3.7)	2(4.3)	2(4.9)	7(4.1)
시청자사과	16(19.8)	7(15.2)	5(12.2)	28(16.7)
합계	81(100)	46(100)	41(100)	168(100)

표안의 ()는 column percent임.

## 2. 미디어별 물리적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 분석

폭력성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내려진 제재가 상이한 미디어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미디어별 분석을 위해 물리적 폭력과 맥락적 폭력으로 인한 제재수위를 지상파와 케이블TV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폭력성 심의 위반건수는 지상파가 91건, 케이블TV가 196건으로 케이블TV에서의 폭력위반이 지상파보다 약 2.2배 많았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물리적 폭력보다 맥락적 폭력에 따른 위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의 경우 물리적 폭력위반에 대한 제재가 권고, 주의, 경고의 순으로 많지만 권고와 주의가 거의 차이 나지 않았다. 케이블TV에서의 물리적 폭력위반에 대한 제재는 주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권고, 경고의 순이었으며 시청자사과도 16.7%에 이른다. 이는 지상파의 시청자사과가 5.7%인 것에 비하면 거의 3배이다. 맥락적인 폭력위반에 대해 지상파 제재수위가 주의(39.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고, 권고인 반면에 케이블TV는 경고(27.7%)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의, 권고이었다. 지상파의 경우 주의가 거의 40%를 차지한 반면에 케이블TV에서는 가장 많이 적용된 경고는 27.7%였다. 또한 시청자사과는 케이블TV는 21.4%로 7.2%인 지상

과보다 거의 3배 많았다. 건수에서도 지상파가 4건이지만 케이블TV는 24건으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물리적, 맥락적 폭력으로 인한 프로그램 중지 결정이 지상파에는 없는 반면에 케이블TV는 물리적 폭력은 6건, 맥락적 폭력은 7건이 있었다.

지상파에 비해 채널수가 많은 케이블TV에서 폭력물이 더 많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케이블TV에서 폭력성 위반건수가 더 많이 지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케이블TV가 지상파보다 폭력성 위반건수는 많다보니 모든 제재유형에 분포되어 있었다. 물리적 맥락적 폭력에 대한 지상파와 케이블TV에 내려진 제재수위의 빈도는 각기 달랐다. 물리적 폭력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권고와 주의간의 차이가 미비하였지만 맥락적 폭력 위반의 경우 권고와 주의의 차이가 많이 제시되었다. 물리적 폭력위반에서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물리적 폭력위반에 대한 제재로 경고가 세 번째로 많은 반면에 맥락적 폭력 위반에서는 권고가 세 번째를 차지하는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표 4. 미디어별에 따른 폭력성 위반에 대한 제재(중복코딩, 단위 건수)

	물리적 폭력		맥락적 폭력	
	지상파	케이블TV	지상파	케이블TV
권고	13(37.1)	21(25.0)	12(21.4)	20(17.9)
주의	12(34.3)	25(29.8)	22(39.3)	30(26.8)
경고	8(22.9)	18(21.4)	18(32.1)	31(27.7)
프로그램 중지		6(7.1)		7(6.2)
시청자 사과	2(5.7)	14(16.7)	4(7.2)	24(21.4)
합계	35(100)	84(100)	56(100)	112(100)

표안의 ()는 column percent임.

## V. 결론

그동안 미디어 폭력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폭력의 사회적 영향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폭력성 위반에 대한 심의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8년 1월

부터 시청자사과에 대한 위헌판정 전인 2012년 7월까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맥락적 측면에서의 폭력성 위반에 대한 제재, 미디어별에 따른 물리적 맥락적 측면에서의 폭력성 위반 제재를 분석하였다.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분석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장면 속의 칼과 총 등의 흉기, 그 외의 폭력도구(칼, 총 등을 제외한), 구타 등의 폭력 행위, 폭력의 결과인 신체의 상처나 피와 같은 폭력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았다. 물리적 폭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은 구타 등의 폭력행위였으며 이에 대한 심의 제재는 권고와 주의가 가장 많이 내려졌다. 그 외에 흉기와 다른 폭력도구 사용한 폭력과 폭력으로 인한 상처나 피의 표현에 대한 제재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많이 행해졌다. 그러나 폭력도구의 경우 주의와 권고의 차이는 한 건으로 아주 미비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물리적 폭력에 대해 28%가 행정지도인 권고였으며 주의가 약 30%를 차지하여 제일 많았다. 위반사례들 72%가 법정제재인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았지만 행정지도인 권고와 법정제재 중 가장 가벼운 주의가 58.3%로 차지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폭력물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표현되고 제시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물리적인 폭력 그 자체가 폭력성을 내포하다보니 폭력성 위반에 관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극 전개 상 필요한 폭력에 대해서는 심의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한 듯, 폭력행위와 흉기의 경우 차이는 미비하지만 권고가 가장 많이 의결되었다.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제재가 중징계보다 경징계가 많은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 제시되었다고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프로그램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것인지 또는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여 제재정도를 의결한 결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맥락적 측면에서 분석한 폭력성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위반건수는 폭력동기가 보상이나 대상 보다 많았지만 폭력동기, 폭력보상, 폭력대상 모두 거의 60%가 주의와 경고를 받아 심의제재가 주의와 경고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리적 폭력에 대해 가해진 제재건

수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는 주의, 경고, 권고의 순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맥락적 폭력위반에 대한 제재수위가 물리적 폭력에 비해 다소 더 높게 의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폭력대상과 폭력보상은 폭력동기에 비해 경고이상의 중징계를 더 많이 받았다.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 부녀자 및 가족친지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물질적, 사회적, 언어적 보상과 관련된 폭력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폭력동기가 제시된 위반사례에 비해 경고이상의 중징계를 더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폭력대상과 폭력보상이 폭력동기에 비해 좀더 가시적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폭력에 관한 어떠한 장면과 내용이 얼마나 제공되는 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되고 보이는 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폭력에 관한 맥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맥락적인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의 묘사가 아닌 폭력행위나 이미지와 관련된 요인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에 근거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심의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 [7][20]에서도 물리적으로 표출되는 폭력은 더불어 맥락적 폭력과 결부되어 제공되고 있어 맥락적 측면에서의 폭력의 영향력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가시적이고 노골적인 물리적 폭력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적절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맥락적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심의사례에도 물리적 폭력과 맥락적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폭력성에 대한 위반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폭력에 대한 맥락적 요인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향후 심의제재 결정과 관련된 맥락적 폭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심의의결 작성 시 상황적인 설명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별 분석에서 물리적 폭력 위반의 경우 지상파에 대해 의결된 제재는 권고, 주의, 경고, 케이블TV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많이 행해졌다. 지상파는 권고가 37.1%, 주의가 34.3%로 중징계보다 경징계 비중

이 더 높았다. 반면에 케이블TV는 경고가 29.8%이며 시청자사과 또한 16.7%를 차지하였다. 맥락적인 폭력에 대해 지상파는 주의, 경고, 권고의 순이며 케이블TV는 주의, 경고, 권고의 순으로 제재를 많이 받아 제재가 주의와 경고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별에 따른 차이는 위반건수에서 나타났다. 물리적, 맥락적 측면 모두에서 케이블TV의 폭력성 위반이 지상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시청자사과가 차지하는 비율도 물리적, 맥락적 측면 모두에서 케이블TV가 지상파보다 높았다. 특히 물리적, 맥락적 폭력으로 인한 프로그램 중지 결정이 지상파에는 없는 반면에 케이블TV는 물리적 폭력은 6건(7.1%), 맥락적 폭력은 7건(6.2%)이 있었다.

물론 지상파에 비해 제공되는 채널수가 많은 케이블TV에서 폭력물이 더 많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케이블TV에서의 폭력성 위반이 더 많이 심의되었을 것이다. 케이블TV는 지상파보다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엄격성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 19세 등급허용 프로그램이 더 많이 편성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에서 실행하는 사전 자체 심의가 케이블TV의 채널보다 좀 더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는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폭력성 위반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에 관한 제재 건수가 비교가 적었다. 이는 폭력에 대해 덜 민감하거나 또는 재미로 간주하여 간과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사소한 폭력일지라도 폭력은 유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폭력적인 표현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행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폭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관리하는 심의에서는 선정성이 폭력성 보다 더 주의깊게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었다. 선정성 못지않게 폭력성의 사회적 영향이 중요함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에 의한 공격적 행위 및 폭력적 태도에 대한 학습은 어린이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바도 있어[13][14] 어린이청소년보호라는 측면에서 폭력은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22]. 따라서 미디어 폭력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듯이 그러한 문제제기나 사태의 심각성이 심의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방송의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를 물리적

맥락적 폭력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폭력성 위반사례들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의 사례집에 제시된 내용에 의존한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심의사례집에 제시된 심의제재관련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면 좀 더 유용한 분석을 되었을 것이다. 또한 명확한 심의제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의사례집에 대한 내용분석과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병행된다면 더 유용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폭력성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여 향후 폭력성 제재연구에서는 편성시간, 등급 등과 같은 요인들을 첨부한 포괄적이고 활용적인 제재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텔레비전 폭력성에 대한 제재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한 선정성에 치중되어 온 심의연구에 폭력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지은, “한국 흉악범죄 기승”, NEWSis, 2013.3.18.
- [2] B. Felson, “Mass Media Effects on Violent Behavi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No.22, pp.103-128, 1996.
- [3] G. Johnson, P. Cohen, M. Smailes, S. Kasen, and S. Brook, “Television Viewing and Aggressive Behavior during Adolescence and Adulthood,” *Science*, Vol.295, No.5564, pp.2468-2471, 2002.
- [4] H. Paik and G. Comstock, “The Effects of Television Violence on Antisocial Behavior: A Meta-analysis,” *Communication Research*, Vol.21, No.4, pp.516-546, 1994.
- [5] 우형진, 김성벽, “폭력 영상물 둔감화에 대한 실험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0권, 제5호, pp.87-130, 2006.
- [6] G. Gerbner, M. Morgan, and N. Signorielli, “Growing up with Television: The

Cultivation Perspective,” In J. Bryant and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4.

- [7] 한균태, 하승태, 서영남, 조의현, “지상파 텔레비전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성 연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1호, pp.311-351, 2007.
- [8] *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Thousand Oaks, CA: Sage, 1996.
- [9] A. Bandura,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3.
- [10] G. Comstock and H. Paik, *Television and the American Child*, NY: Academic Press, 1991.
- [11] B. Gunter, *The Question of Media Violence Media Effec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1994.
- [12] F. Topel, *TMNT's Censored Violence. Canmag*, 2007.
- [13] L. Huesman, R. Moise, C. Podoski, and E. Leonard, “Logitudinal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xposure to TV Violence and Thei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in You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9, No.2, pp.201-221, 2003.
- [14] 구정화, *청소년의 폭력성 멀티미디어의 수용정도가 폭력성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15] C. Anderson and B. Bushman, “The Effects of Media Violence on Society,” *Science*, No.295, pp.2377-2378, 2002.
- [16] B. Kaye and B. Saposky, “Offensive Language in Prime-time Television: Four Years After Television Age and Content Ratings,” *J.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8, No.4, pp.554-569, 2004.
- [17] W. Potter, *The 11 Myths of Media Violence*,

- Thousand Oaks, CA: Sage, 2003.
- [18] M. Morgan and J. Shanahan, "The State of Cultivation," J.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54, No.2, pp.337-355, 2010.
- [19] 오준근, "방송위원회의 주의경고 및 권고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방송연구, 2004년 겨울호, pp.227-250, 2004.
- [20] W. Potter and R. Warren, "Humor as Camouflage of Television Violence," J. of Communication, Vol.48, No.2, pp.40-58, 1998.
- [21] 하승태, 민영, 김창숙, "주시청시간대 지상파 텔레비전의 폭력성 연구: 폭력의 맥락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6호, pp.317-345, 2007.
- [22] 홍숙영, "TV 다큐멘터리의 아동성 폭력 재현 방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pp.102-111, 2011.

저 자 소 개

김 유 정(Yoojung Kim)

정회원



- 198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학사)
- 1984년 2월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석사)
- 1994년 4월 :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 뉴미디어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콘텐츠 정책